대법원 1994.09.23. 선고 94다21672 판결[손해배상(자)]

#### 【판시사항】

자동차를 할부로 매도한 자의 운행지배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

### 【판결요지】
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, 자동차를 할부로 매도한 자가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는가 여부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.

#### 【참조조문】
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

# 【참조판례】

대법원 1992.4.14. 선고 91다4102 판결(공1992,1553)

# [전 문]

【원고, 피상고인】여00 외 2인

【피고, 상고인】최00

【원심판결】대전지방법원 1994.3.25. 선고 93나5527 판결

# 【주 문】

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#### [이 유]

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.

#### 제1점에 대하여

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,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외 한00에게 인도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동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,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 위 한00가 위 오토바이에 불법으로 번호판을 달고 다녔다고 하여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. 논지는 이유 없다.

# 제2점에 대하여
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할부로 매도한 자가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는가 여부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(당원 1992.4.14. 선고 91다4102 판결 참조),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,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여전히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. 논지는 이유 없다.

#### 제3점에 대하여

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한용배의 과실비율을 40%로 평가한 것은 적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#### 논지도 이유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

판결한다.